

##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13조에 의거 각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편입학 허가 및 모집인원)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단, 통합과정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.

① 각 대학원장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13조에 따라 대학원위원회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 통합과정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.

제3조(지원자격) 각 대학원 편입학 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 :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일정기간 수학한 사람 및 수료자

2. 박사학위과정 :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·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일정기간 수학한 사람 및 수료자

제4조(지원서류) 각 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편입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
2. 전적 대학원 수료(재적)증명서 1부

3. 대학(원)졸업증명서 1부

4. 전적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

제5조(전형방법) 편입학 전형은 서류전형 및 구술고사로 한다.

제6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① 편입학한 사람은 대학원 학칙에 규정한 수업연한에서 전적 대학원 이수 학기를 제외한 학기를 이수하되, 소속 대학원에서 최소한 두 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, 소정의 교과 및 논문연구(연구보고)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편입학한 학생의 본교 재학연한은 4년으로 한다.

제7조(성적인정) 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인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학과 책임교수는 각 대학원의 학과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전적 대학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, 「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」 및 대학원위원회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)의 의결에 의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)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